국무총리 훈령 제189호

국무총리소원심의회운영규칙중 개정안

국무총리소원심의회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이 사항에 대한 재결은 위원장이 전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의 성질상 전결처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안이 형식적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각하하는 경우
2.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하는 경우
3.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이 명백하여 인용하는 경우
4. 기타 유사한 사안에 대한 재결선례가 있거나,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 소원심의회안건 심의결과에 대한 국무총리 재결절차개선에 관한 보고

국 무 총 리 지 시 내 용

국무총리소원심의회에서 심의된 안건의 재결을 국무총리소원심의회 위원장인 법제처장이 전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 재결을 위원장이 모두 전결하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됨.

O 재결은 소원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이므로 원 결재권자가 결재하심이 소원법의 취지에 맞는 다는 점

O 중요사안의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한 재결의 결과는 여러 유관부처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O 소원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기능이 미약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

2. 지시이행을 위한 개선조치

O 위와 같은 문제점에 비추어 처분의 적법 또는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와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인 다음과 같은 사안은 위원장이 전결하도록 하며, 그 외 중요사안은 국무총리께서 재결하시도록 함.

가. 사안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각하하는 경우

나.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하는 경우

다.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이 명백하여 인용하는 경우

라. 기타 유사한 사안에 대한 재결선례가 있거나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

O 이를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165호 국무총리소원심의회운영규칙을 별지와 같이 개정조치함